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6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)</b></p> <p>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액은 <u>제31조</u>에서 정한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적용하여 정하며,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 총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</p>	<p><b>제6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)</b></p> <p>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액은 <u>제29조</u>에서 정한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적용하여 정하며,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 총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</p>
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<u>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</u>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(<u>신설</u>)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<u>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("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"라 한다. 이하 같다)</u>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투자자</u>의 성명 및 주소</p> <p>2. <u>예탁 수익증권의 종류</u> 및 수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<u>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("실질</p>	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<u>전자등록</u>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u>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<u>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(이하 "수익증권고객계좌부"라 한다)</u>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고객(이하 "투자자"라 한다)</u>의 성명 및 주소</p> <p>2. <u>수익증권</u>의 종류 및 수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</u></p>

<p>수익자"라 한다. 이하 같다)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,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</p> <p>⑤ 제 1 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제 44 조</u>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	<p><u>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</u></p> <p>④ 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제42조</u>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
<p><b>제11조(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)</b></p> <p>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,000좌권, 10,000좌권, 100,000좌권, 1,000,000좌권, 10,000,000좌권, 100,000,000좌권, 1,000,000,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.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<b>제12조(수익증권의 재교부)</b></p> <p>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("현물보유수익자"라 한다. 이하 같다)는 분실·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<p><u>있다. 다만,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③ <u>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 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	
<p><b>제13조(수익증권의 양도)</b></p> <p>① <u>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예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11조(수익증권의 양도)</b></p> <p>① <u>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4조(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)</b>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<u>실질수익자</u>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실질수익자의</u>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</li> <li>2. <u>실질수익자가</u>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</li> </ol> <p>⑥ <u>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<u>명부</u>(“<u>실질수익자명부</u>”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<u>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</u>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⑦ <u>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예의</u></p>	<p><b>제12조(수익자명부)</b>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<u>수익자</u>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수익자의</u>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</li> <li>2. <u>수익자가</u>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</li> </ol> <p>⑥ <u>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<u>수익자명부</u>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<u>수익자의</u>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b>&lt;삭제&gt;</b></p>

<p>기재는 <u>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실질 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⑧ (생략)</p>	<p><u>⑦ (호변 변경)</u>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</b> (생략)</p>	<p><b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</b> (<u>조변 변경</u>)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6조(투자목적)</b> (생략)</p>	<p><b>제14조(투자목적)</b> (<u>조변 변경</u>)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<u>투자대상</u>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(<u>조변 변경</u>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<u>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집합투자업자는 <u>제17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<u>제17조제1항제1호</u>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9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<u>제17조제2항</u>의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6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(<u>조변 변경</u>) 집합투자업자는 <u>제15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<u>제15조제1항제1호</u>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9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<u>제15조제2항</u>의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
<p><b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(생략)</p>	<p><b>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(<u>조변 변경</u>)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b> ①<u>제18조</u>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</p>	<p><b>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b> ①<u>제16조</u>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</p>

<p>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<u>제18조제1호</u>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	<p>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<u>제16조제1호</u>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
<p><b>제21조(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u>제19조(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)</u> (<u>조번 변경</u>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2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u>제20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</u> (<u>조번 변경</u>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3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u>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</u> (<u>조번 변경</u>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4조(수익증권의 판매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u>제22조(수익증권의 판매)</u> (<u>조번 변경</u>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4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</b></p>	<p><u>제22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</u> (<u>조번 변경</u>)</p>
<p><b>제25조(판매가격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u>제23조(판매가격)</u> (<u>조번 변경</u>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6조(수익증권의 환매)</b>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<u>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</u></p>	<p><u>제24조(수익증권의 환매)</u> (<u>조번 변경</u>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 (<u>호번 변경</u>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

<p><u>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.</u></p>	
<p><b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b>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(조번 변경)</b></p> <p>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8조(환매연기)</b></p> <p>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</p>	<p><b>제26조(환매연기) (조번 변경)</b></p> <p>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</p>

<p>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29조(일부환매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<u>제28조</u>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(환매연기총회)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(이하 “정상자산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<b>제27조(일부환매) (조번 변경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<u>제26조</u>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(환매연기총회)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(이하 “정상자산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0조(투자신탁재산 평가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b>제28조(투자신탁재산 평가) (조번 변경)</b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1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<u>제30조</u>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“순자산총액”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<b>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(조번 변경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<u>제28조</u>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“순자산총액”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b>제30조(투자신탁의 회계기간) (조번 변경)</b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b>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(조번 변경)</b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4조(이익분배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b>제32조(이익분배) (조번 변경)</b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5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b>제33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) (조번 변경)</b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


<p><b>제36조(상환금 등의 지급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가 <u>제46조</u>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<b>제34조(상환금 등의 지급) (조번 변경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가 <u>제44조</u>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7조(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</b></p> <p>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<u>제34조</u> 및 <u>제36조</u>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35조(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(조번 변경)</b></p> <p>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<u>제32조</u> 및 <u>제34조</u>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8조(수익자총회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b>제36조(수익자총회) (조번 변경)</b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9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</b>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(消却)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37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 (조번 변경)</b>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
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(생략)</p>	<p><b>제38조(보수) (조번 변경)</b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1조(판매수수료)</b>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<u>제34조</u>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<u>제51조</u>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</p>	<p><b>제39조(판매수수료) (조번 변경)</b>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<u>제32조</u>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<u>제49조</u>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</p>



<p>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④ ~ ⑤ (생략)</p>	<p>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2조(환매수수료)</b> (생략)</p>	<p><b>제40조(환매수수료) (조번 변경)</b>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3조(기타 운용비용 등)</b> (생략)</p>	<p><b>제41조(기타 운용비용 등) (조번 변경)</b>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1. (생략) 2. 신탁업자의 변경(제45조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 3. ~ 9. (생략) ② ~ ⑤ (생략)</p>	<p><b>제42조(신탁계약의 변경) (조번 변경)</b>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신탁업자의 변경(제43조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 3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5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 (생략)</p>	<p><b>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(조번 변경)</b>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 (생략)</p>	<p><b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(조번 변경)</b>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7조(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)</b>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6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-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.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6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</p>	<p><b>제45조(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) (조번 변경)</b>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4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-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.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4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</p>

<p>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.</p>	<p>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.</p>
<p><b>제48조(투자신탁의 합병)</b> (생략)</p>	<p><b>제46조(투자신탁의 합병)</b> <a href="#">(조번 변경)</a>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 (생략)</p>	<p><b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 <a href="#">(조번 변경)</a>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0조(손해배상책임)</b> (생략)</p>	<p><b>제48조(손해배상책임)</b> <a href="#">(조번 변경)</a>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b> (생략)</p>	<p><b>제49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b> <a href="#">(조번 변경)</a>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2조(관련법령 등의 준용)</b> (생략)</p>	<p><b>제50조(관련법령 등의 준용)</b> <a href="#">(조번 변경)</a>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3조(관할법원)</b> (생략)</p>	<p><b>제51조(관할법원)</b> <a href="#">(조번 변경)</a>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부칙</b> <a href="#">(시행일)</a> 이 신탁계약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</p>